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 보고서 (2020회계연도)

2021. 12.



||| 목 차 |||

│.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1. 성과분석 개요]
2. 주요 개선사항 3
3. 분석 지표 8
4. 추진일정 9
Ⅱ. 2020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 12
1. 총 평12
2. 분야별 분석결과 13
3. 자치단체별 순위 19
Ⅲ. 분야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 31
1. 기금의 적극적 활용 32
2. 기금운용 건전성 40
3. 기금 정비49
4. 가·감점 55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59
1. 개선 권고사항 60
2. 성과분석 결과 공개 62

I. 성과분석 개요 및 방향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 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유용의 투명성 제고
 - ※ (법적근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020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나. 3번·7번·8번 평가항목은 1년 경과하지 않더라도 포함

□ 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1·2·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 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 공개

1

□ 분석 방향

- (기금효율성 강화)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유도
- (건전성 제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 축소,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기금 건전성 평가
- (기금 정비 유도)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여 기금 운용 혁신

□ 시행 경과

- ('06년~)「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 추진
- ('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 결과 활용

-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Ⅱ. 주요 개선사항

□ 일정 개선(안): 회계연도 간 순기 조정

- (현행)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을 2020년(6월) 안내
 - 2019회계연도 기금 운용 종료 이후, 해당연도 성과분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유불리 발생 등 예측성 부족
- (개선) 성과분석 기준 안내 시기를 앞당겨 자치단체 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 변동사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등)을 반영한 '20년 기금운용 성과 분석 기준을 당겨 안내(6월→5월초), 21년도 기준을 '20년 연내 사전 안내

< 성과분석 기준 안내 개선일정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현행	· 2019년 기준(6월)	· 2020년 기준(6월	· 2021년 기준(6월)
	· 2019년 기준(상동)		
개선		· 2020년 기준 (5월	초)
		· 2021년 기준(연니	H)

□ 분석지표 정비

● (사업비 편성 비율) 재무활동(회계 간 전출, 예탁)으로 운영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평가대상 제외

현 행	개 정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 <u>사업비 편성액</u>	사업비 = <u>사업비 편성액</u>
편성 비율 기금운용계획상 × 100(%)	편성 비율 = 기금운용계획상 × 100(%)
지출액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강채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강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률 지표도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반영

- 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20.6월)
 -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 대체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실적을 평가에 반영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점)	<u>3. 통합</u> 지
○ (지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해당연도 기금	○ (지표
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재정

혀 행

구 분	세부 배점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3점 부여	4점
②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3점

○ (점수산정) 기금지출액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운용 실적(3점)

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구 분	세부 배점
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1점 부여	2점
②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1점

○ (점수산정) 기금지출액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개 정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10점)

표) '20년 6월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통합 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개정 및 설치·운용 여부

구 분	세부 배점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 (A) '20년도 중 실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 운용한 경우('20년 기금 결산서 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경우) 10점 부여 <u>※ (B) '20년도 중 조례 제·개정 완료된</u> 경우 7점 부여	10점
 ※ (C) '20년도 중 조례가 제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5점 부여 	

○ (지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해당연도 기금 │ ○ (점수산정) A, B, C에 해당하는 경우 10점, 7점, 5점을 부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서면회의 개최도 회의 실적에 포함

현 행	개 정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 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 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서면심사는 소집회의 실적에 미반영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4 (타회계 의존율)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법정의무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평가대상 제외로 원활한 재원마련 여건 조성

현 행	│ 개 정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 ·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 ·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 <mark>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 100(%)</mark> 기금수입결산 총액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타회계 = 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지표적용 제외대상: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 정비·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 주민지원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지방세발전기금(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주민지원기금(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 지표적용 제외대상 : <u>법정의무기금 및</u> 감채·청사 건립·재정안정화· 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u>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u>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例)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 기금(옥외광고울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 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46조), 지방세발전 기금(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제주설치특별법 제267조),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 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1조)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청사건립기금, 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제시된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한해 1점 가점 부여

현 행 개 정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자치단체명> < 자치단체명> 해당 기금 권고사항 평가지표 조치계획 평가지표 권고사항 조치계획 기금 A기금 A기금 (1시1) 예시) 기금정비율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동종 자치단체 (재정수입 동종 자치단체 B기급 B기급 대비 기금 대비 기금 비율 대비 비율 대비 조성액 비율) 교다 조성액 비율) 과다 C기금 C기금 ... ※「2018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선 권고사항 없는 지표의 경우 '해당사항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없음'으로 제출(필수)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 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 ○ (점수산정)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제출여부 점수 미제출 제출 +1

(경상적 경비 비율) 지출액 대부분이 재무활동(전출금, 예탁금 등)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의 경상적 경비 평가대상 제외

현 행	개 정
O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O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 경상적 경비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 100(%)	경상적 = 경상적 경비 경비 비율 = 기금 총 지출액 × 100(%)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u>통합</u> <u>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u> ,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u>지역개발기금</u> 경상적 경비는 제외

〈참고: 전년도 주요 개선사항〉

□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여

- **(포상지급)** 기금운용 성과분석 순위에 따라 **총 28개** 자치단체 (광역4, 기초24*)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부여
 - * 인구·재정력 규모가 유사한 단체를 시·군·구별로 4개씩 그룹화하고(총12개, 붙임1 참고). 그룹 당 2개 단체 선정
- (규모) 특별교부세 총 3억원

□ 분석지표 개선

-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지출액 산정 시, 사고이월비 제외
 - 전년도 사고이월은 평가 대상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업비 지출액'에서 제외 후 지표 산정
- ②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 부분점수는 조례가 '19년 내에 지방 의회에 발의된 경우에 한해 부여('20년 발의 또는 발의 계획은 불인정)
- ❸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 개선 권고사항 **미이행률**에 따라 **감점 조치**(최대 △2점) 하고 있으나, 정량 지표가 아닌 관계로 **미제출시 감점** 방식으로 변경(△1점)

Ⅲ. 분석 지표

□ 3개 분야(8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

분 야 (배점)	지표 항목	배점	바람직한 상태
	1. 사업비 편성 비율		↑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2. 사업비 집행률	15	↑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10	왕
	4. 미회수채권 비율	15	\
기금운용의 건전성 (40)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
	6. 타회계 의존율	10	\
기금 정비	7.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
(20)	8. 기금 수 현황	10	\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작성
기 타	• 경상적 경비 비율	△2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작성

Ⅳ. 추진일정



지 방 의 회

분석결과 의회 제출 (12월)

붙임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21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э <u>ι</u> π ′	-	(10) 0 10	¬^ T(3370), (3)	#E — (.070)/ @	/기되극시미미를	= (370)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1 1 = 1 0			
		т.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I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16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3131 114 11	2121 -17-11	7171 718111	2121 21 21
		П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人	l	(20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경기 과천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양산시
(75	/H)	Ш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19개)	전북 군산시 전남 광양시	전북 익산시 경북 경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안동시	전남 순천시	전남 나주시
				강원 태백시	경북 안동시 강원 속초시	경남 거제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IV		중년 대백시 충남 보령시			물록 제신시 전북 정읍시
			충남 공주시 전북 남원시	중담 모당시 전북 김제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성급시 경북 영천시
		(20개)	경북 상주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북 문경시	경북 김천시 경남 통영시	경북 영주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부산 기장군	경국 군경시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구선 기정도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간인 성약도 강원 홍천군	출앤 출포포 충북 진천군	중북 음성군 충북 음성군
		I			중단 중인도 충남 예산군		중국 급성도 전북 완주군
		(21개)		충남 홍성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충남 태안군 경북 울진군	기 선도 선도도 경남 함안군
			전남 화순군 경남 창녕군	신담 구인군	경독 실측꾼	경국 물신문	경금 임안군
			경남 창녕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철원군	충북 옥천군
		п	중북 증평군 중북 증평군	중북 괴산군	중남 금산군	성권 설권도 충남 서천군	중국 국신군 전북 고창군
		(20개)	정북 등당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해남군	전국 고등군
균	L		전남 영광군	경북 성주군	경북 예천군	경남 고성군	경남 거창군
_			인천 옹진군	강원 영월군	강원 인제군	강원 양양군	충북 보은군
(82	/H)	Ш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성군	장국 포도군 전남 완도군
		(20개)	전남 진도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남해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강원 화천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충남 청양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IV	전남 구례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신안군
		(21개)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07 001	07 001	07 04 6	07 201
		-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은평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Ι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12개)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16 6 11	1 1 1 1	1 0 0 1
	(25개)		서울 종로구	서울 중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23,11)	П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서대문구
		(13개)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자치구		-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69개)		I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03/11)	광역	(22개)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	
	(44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11)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П (2.2.7")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22개)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1	

Ⅱ. 2020회계연도 기금성과분석 결과

I . 총 평

□ 기금의 효율적 활용(40점)

- **사업비 편성 비율***은 34.1%로 전년 대비 좋아짐(19.5% ⇒ 34.1%)
- **사업비 집행률****은 69.3%로 하락하여 전년 대비 나빠짐(77.8% ⇒ 69.3%)
- * 기금운용계획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 ** 기금운용계획상 사업비 편성액(최종 사업비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03개 자치단체가 운용하고 있으며, 81개 단체가 설치조례 제·개정 완료, 10개 단체가 조례를 발의하였음

□ 기금운용의 건전성(40점)

- **미회수채권 비율**은 전년 대비 다소 나빠짐(1.5% ⇒ 2.8%)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은 전년 대비 좋아짐(11.2점 ⇒ 13.2점)
- **일반·기타 특별회계 의존율**은 전년 대비 나빠졌음(11.1% ⇒ 15.2%)

□ 기금 정비(20점)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5.2%로 전년 대비 좋아짐(6.0% ⇒ 5.2%)
- **자치단체 평균 분석대상 기금 수**는 5.1개로 2019년 회계연도와 유사함 < 기금분석 결과 총괄 >

분 야 (배점)	지표 항목(배점)	결 과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1. 사업비 편성 비율(15)	34.1% (19년 19.5%)	1
기금의 효율적	2. 사업비 집행률(15)	69.3% (19년 77.8%)	
표르기 활 용 (40)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10)	설치(조례 제정)운용 103개, 설치조례 제·개정 완료 81개, 조례발의 10개 단체(신규지표)	운용
기금	5. 미회수채권 비율(15)	2.8% (19년 1.5%)	\
운용 건전성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13.2점 (19년 11.2점)	1
(40)	7. 타회계 의존율(10)	15.2% (19년 11.1%)	\downarrow
기금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5.2% (19년 6.0%)	\downarrow
정비 (20)	9. 기금 수 현황(10)	자치단체 평균 5.1개 (19년 5.1개) (분석대상 기금)	<u></u>
기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 경상적 경비 비율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99개 자치단체 가점 46개 자치단체 51개 기금 감점 97개 자치단체 가점	-

Ⅱ. 분야별 분석결과

기금의 효율적 활용(40점)

- ① 사업비 편성 비율(비율 기준, 15점)
-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12조 4,435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4조 2,396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34.1%)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5조 6,515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2조 6,166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46.3%)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6조 7,920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1조 6,230억원(사업비 편성 비율은 23.9%)

(단위 :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 출액(B)	편성비율 (A/B)
계	42,396	124,435	34.1
광역	26,166	56,515	46.3
기초	16,230	67,920	23.9

② 사업비 집행률(비율 기준, 15점)

-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편성액은 4조 2,396억원, 지출액은 2조 9,375억원(사업비 집행률 69.3%)
 - (광역) 사업비 편성액은 2조 6,166억원, 지출액은 1조 8,098억원 (사업비 집행률 69.2%)
 - (기초) 사업비 편성액은 1조 6,230억원, 지출액은 1조 1,277억원 (사업비 집행률 69.5%)

(단위: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 행 율(A/B)
계	29,375	42,396	69.3
광역	18,098	26,166	69.2
기초	11,277	16,230	69.5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10점)

- **(설치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는 103개, 설치조례 제·개정 완료는 81개, 조례발의는 10개 단체
 - (광역)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전시, 경기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경남 본청이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조례 발의를 완료한 상태임
 - (기초) 기초단체 중에서는 98개 단체가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70개 단체가 설치조례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9개 단체가 조례 발의를 완료하였음

(단위 : 개)

구분	설치운용	설치조례완료	조례 발의	미설치	합계
계	103	81	10	49	243
광역	5	11	1	0	17
기초	98	70	9	49	226

2 기금 운용의 건전성(40점)

① 미회수채권 비율(15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미수채권 총액(A)은 329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B)은 1조 1,612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A/B×100)은 2.8%
- (광역) 미수채권 총액은 55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 1조 57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은 0.5% ※10개 단체는 미수채권율이 0%
- (기초) 미수채권 총액은 274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은 1,555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은 17.6%

(단위: 억원, %)

구분	미수채권 기한 도래된 미회수율		비	고	
⊤世	총액(A)	채권 총액(B)	미외구뀰	최고	최저
계	329	11,612	2.8	-	-
광역	55	10,057	0.5	68.0(세종)	0(10フリ)
기초	274	1,555	17.6	100 (15개)	0 (130개)

※ 기한 도래된 채권액: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❷당해년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②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점)

*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 위원회 운영 2,248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345개 (59.8%), ② 서면심사 포함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1,831개(81.5%),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2,116개(94.1%),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987개(88.4%, ('19) 1,103개 → ('20) 1,987개)
 - * 전체 기금(1년 미경과 기금 제외) 중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이거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목표 기금액 조성 중인 기금 등)는 제외
 - (광역) 총 260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208개 (80.0%),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225개(86.5%),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249개(95.8%),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219개(84.2%)
 - (기초) 총 1,988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137개 (57.2%),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1,606개(80.8%),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867개(93.9%),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768개(88.9%)

7 8	기금 수	평가 항목			평균	
구분	(개)	①	2	3	4	점수
계	2,248	1,345 (59.8%)	1,831 (81.5%)	2,116 (94.1%)	1,987 (88.4%)	13.2
광역	260	208 (80.0%)	225 (86.5%)	249 (95.8%)	219 (84.2)	14.1
기초	1,988	1,137 (57.2%)	1,606 (80.8%)	1,867 (93.9%)	1,768 (88.9%)	13.1

- * 평균점수는 개별기금 대상으로 15점 만점 기준
-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③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0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8조 701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A)은 1조 2,271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A/B)은 15.2%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6조 7,108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은 5,419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8.1%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1조 3,593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은 6,852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50.4%

(단위: 억원, %)

	타회계	기금수입	타회계	비	고
구분	전입금(A)	결산총액(B)	의 존율(%)	최고	최저
계	12,271	80,701	15.2	_	_
광역	5,419	67,108	8.1	대전 (31.2%)	강원,세종 (0%)
기초	6,852	13,593	50.4	공주시, 홍성군 (100.0%)	65개 단체 (0%)

3 기금 정비 (20점)

- ①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점) *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407조 4,576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20조 9,942억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5.2%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83조 707억원이고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14조 7,249억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8.0%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224조 3,869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6조 2,693억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2.8%

(단위: 억원, %)

구분	일 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재정 인정화기금 (E)	분석 기금 (F B C-D-E)	비율 (F/A)
계	4,074,576	375,733	39,983	7,041	118,766	209,942	5.2
광역	1,830,707	220,712	20,592	6,788	46,082	147,249	8.0
기초	2,243,869	155,021	19,391	253	72,684	62,693	2.8

② 기금 수 현황(10점)

*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 총 기금 수 2,390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235개
 - (광역) 총 기금 수 271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72개(평균 10.1개)
 - (기초) 총 기금 수 2,119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063개(평균 4.7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법정의무 기금 수	감채적립 기금 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수	분석대상 (F=A-E	
	(A)	(B)	(C)	(D)	전체	평균
계	2,390	964	12	179	1,235	5.1
광역	271	76	6	17	172	10.1
기초	2,119	888	6	162	1,063	4.7

4 기타

① 전년도 개선 권고 사항 조치계획(1점)

- (전국) 총 199개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 (광역) 17개 단체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 (기초) 182개 단체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였음

② 경상적 경비 비율(최대 2점 감점)

- (전국) 46개 자치단체가 감점을 받았으며,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의 수는 51개로 전년보다 5개 감소
- (광역) 부산(2개), 인천, 충남 등 3개 단체가 감점
- (기초) 43개 기초단체가 감점을 받았으며 종로구는 3개의 기금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이었음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1점)

- (전국) 97개 자치단체에 가점(계획서·결산서 모두 작성)
 - (광역) 총 12개 자치단체* 가점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경북
 - (기초) 총 85개 기초자치단체 가점

Ⅲ. 자치단체별 순위

□ 광역자치단체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대전광역시	89.4	1
강원도	87.4	2
경상남도	86.7	3
부산광역시	86.4	4
경기도	85.7	5
전라북도	85.2	6
전라남도	83.4	7
대구광역시	82.8	8
충청북도	81.8	9
서울특별시	81.5	10
인천광역시	80.1	11
충청남도	79.8	12
광주광역시	79.7	13
울산광역시	77.5	14
경상북도	76.0	15
세종특별자치시	73.5	16
제주도	71.0	17

□ 시- |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도 부천시	98.3	1
경기도 용인시	89.3	2
경상남도 김해시	87.5	3
경기도 안산시	85.5	4
경기도 고양시	83.1	5
경기도 평택시	82.8	6
경기도 안양시	81.1	7
경상남도 창원시	79.8	8
충청북도 청주시	79.6	9
전라북도 전주시	79.5	10
경상북도 포항시	75.6	11
경기도 성남시	75.6	11
경기도 화성시	72.7	13
경기도 수원시	71.5	14
충청남도 천안시	70.1	15
경기도 남양주시	69.4	16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기도 양주시	96.0	1
경기도 군포시	94.6	2
경상남도 양산시	93.4	3
경기도 의정부시	90.5	4
경기도 광주시	87.5	5
경기도 하남시	87.0	6
경상남도 진주시	84.7	7
경기도 김포시	84.5	8
경기도 의왕시	83.6	9
경상북도 경산시	81.5	10
경기도 오산시	80.6	11
경기도 이천시	79.0	12
경기도 파주시	78.9	13
충청남도 아산시	78.3	14
경상북도 구미시	77.6	15
강원도 원주시	77.3	16
전라남도 여수시	75.5	17
경기도 과천시	73.3	18
경기도 광명시	71.6	19
경기도 시흥시	69.7	20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라남도 광양시	91.0	1
전라북도 익산시	90.3	2
경상북도 안동시	89.6	3
경기도 구리시	87.8	4
강원도 춘천시	85.7	5
경기도 여주시	85.0	6
전라남도 순천시	84.7	7
충청북도 충주시	83.3	8
경기도 안성시	81.4	9
경상남도 거제시	80.9	10
경기도 동두천시	78.8	11
강원도 강릉시	78.6	12
전라남도 나주시	77.2	13
전라북도 군산시	76.2	14
전라남도 목포시	75.9	15
경기도 포천시	71.5	16
경상북도 경주시	70.9	17
충청남도 서산시	69.0	18
충청남도 당진시	65.1	19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강원도 동해시	92.7	1	
경상남도 밀양시	91.5	2	
경상남도 사천시	91.0	3	
경상북도 영주시	88.8	4	
충청북도 제천시	88.3	5	
경상북도 상주시	88.0	6	
충청남도 공주시	86.3	7	
충청남도 계룡시	84.4	8	
경상북도 문경시	82.8	9	
충청남도 보령시	80.9	10	
전라북도 김제시	78.7	11	
강원도 삼척시	77.7	12	
전라 북 도 정읍시	77.6	13	
강원도 속초시	77.3	14	
전라북도 남원시	77.1	15	
경상북도 영천시	76.8	16	
강원도 태백시	75.3	17	
충청남도 논산시	75.0	18	
경상북도 김천시	72.5	19	
경상남도 통영시	72.3	20	

□ 군-।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충청북도 진천군	92.8	1
전라남도 화순군	92.8	1
경기도 연천군	89.0	3
충청남도 태안군	86.8	4
대구광역시 달성군	86.5	5
울산광역시 울주군	84.5	6
경상북도 울진군	83.8	7
인천광역시 강화군	83.3	8
충청남도 예산군	83.0	9
충청남도 홍성군	83.0	9
전라북도 완주군	81.5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78.8	12
경상북도 칠곡군	78.5	13
충청남도 부여군	78.0	14
충청북도 음성군	78.0	14
경상남도 창녕군	77.1	16
경기도 가평군	76.0	17
경상남도 함안군	75.6	18
전라남도 무안군	70.1	19
경기도 양평군	66.8	20
강원도 홍천군	65.9	21

□ 군-Ⅱ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상남도 고성군	100.0	1
경상북도 예천군	88.2	2
전라남도 고흥군	87.6	3
강원도 평창군	87.1	4
충청남도 금산군	86.3	5
경상북도 성주군	84.6	6
충청북도 증평군	82.5	7
경상남도 거창군	79.4	8
강원도 철원군	77.8	9
강원도 횡성군	77.4	10
충청남도 서천군	77.2	11
강원도 정선군	75.7	12
전라북도 고창군	75.3	13
충청북도 괴산군	74.1	14
충청북도 옥천군	74.0	15
전라북도 부안군	73.1	16
전라남도 해남군	72.9	17
전라남도 영광군	69.6	18
전라남도 담양군	62.8	19
전라남도 영암군	61.5 20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경상남도 하 동 군	93.0	1	
충청북도 단양군	89.6	2	
충청북도 영동군	89.5	3	
전라남도 장성군	88.1	4	
경상북도 의성군	87.0	5	
경상남도 남해군	86.3	6	
전라남도 완도군	85.7	7	
경상남도 함양군	84.5	8	
경상북도 영덕군	79.5	9	
충청북도 보은군	79.2	10	
경상남도 산청군	79.2	10	
전라남도 보성군	79.0	12	
강원도 양양군	78.9	13	
경상남도 합천군	77.5	14	
강원도 인제군	77.2	15	
강원도 영월군	77.1	16	
경상북도 고령군	73.5	17	
경상북도 청도군	71.7	18	
인천광역시 옹진군	67.5	19	
전라남도 진도군	62.6	20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전라남도 신안군	99.7	1	
강원도 화천군	90.8	2	
경상북도 봉화군	82.9	3	
전라남도 구례군	81.8	4	
경상북도 군위군	81.4	5	
강원도 고성군	80.5	6	
전라북도 임실군	79.7	7	
전라북도 무주군	78.5	8	
강원도 양구군	78.0	9	
전라남도 함평군	77.7	10	
전라남도 곡성군	77.1	11	
경상북도 울릉군	77.1	11	
경상남도 의령군	77.1	11	
전라북도 장수군	76.5	14	
전라남도 강진군	75.2	15	
전라남도 장흥군	71.3	16	
경상북도 영양군	69.8	17	
충청남도 청양군	67.6	18	
전라북도 진안군	66.7	19	
전라북도 순창군	66.5	20	
경상북도 청송군	62.2	21	

□ 구(서울)- □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89.6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86.4	2	
서울특별시 관악구	85.0	3	
서울특별시 은평구	83.1	4	
서울특별시 노원구	82.9	5	
서울특별시 송파구	81.5	6	
서울특별시 양천구	75.8	7	
서울특별시 마포구	75.6	8	
서울특별시 강서구	74.5	9	
서울특별시 강남구	72.1	10	
서울특별시 서초구	69.8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67.9	12	

□ 구(서울)-Ⅱ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서울특별시 금천구	89.1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86.8	2	
서울특별시 성동구	82.2	3	
서울특별시 중랑구	79.9	4	
서울특별시 광진구	79.0	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79.0	5	
서울특별시 도봉구	77.0	7	
서울특별시 중구	76.0	8	
서울특별시 동작구	75.9	9	
서울특별시 구로구	71.5	10	
서울특별시 종로구	69.4	11	
서울특별시 용산구	67.0	12	
서울특별시 강북구	60.6	13	

□ 구(광역)- □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대구광역시 북구	94.4	1
대구광역시 달서구	93.5	2
부산광역시 강서구	92.9	3
대구광역시 동구	89.9	4
인천광역시 남동구	86.1	5
울산광역시 북구	83.5	6
울산광역시 남구	82.5	7
대구광역시 수성구	79.4	8
광주광역시 북구	79.2	9
부산광역시 동래구	78.0	10
인천광역시 부평구	77.2	1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75.9	12
광주광역시 서구	75.3	13
인천광역시 계양구	74.7	1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74.5	15
대전광역시 서구	71.4	16
인천광역시 연수구	71.3	17
광주광역시 광산구	70.9	18
대전광역시 유성구	70.4	1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69.3	20
인천광역시 서구	67.5	21
인천광역시 중구	65.1	22

□ 구(광역)-Ⅱ

구분	최종점수	유형내 순위
부산광역시 금정구	93.9	1
부산광역시 서구	92.4	2
부산광역시 사하구	92.0	3
대구광역시 서구	90.6	4
대구광역시 남구	88.1	5
부산광역시 중구	87.5	6
부산광역시 북구	84.1	7
광주광역시 동구	83.1	8
울산광역시 동구	81.0	9
대전광역시 대덕구	80.1	10
대구광역시 중구	79.4	11
울산광역시 중구	79.0	12
부산광역시 연제구	77.6	13
부산광역시 영도구	77.0	14
부산광역시 남구	76.9	15
대전광역시 동구	76.1	16
부산광역시 동구	74.6	17
대전광역시 중구	73.4	18
광주광역시 남구	73.2	19
부산광역시 사상구	72.5	20
인천광역시 동구	68.5	21
부산광역시 수영구	65.1	22

Ⅲ. 분이별·지표별 세부분석 결과

30

I. 기금의 효율적 활용

- < 기금의 효율적 활용(40) >

- 사업비 편성 비율(15), 사업비 집행률(1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운용 실적(10)

※ 괄호안은 배점

1-1 사업비 편성 비율(15)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12조 4,435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4조 2,396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34.1%)
 - (광역)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5조 6,515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2조 6,166억원(사업비 편성 비율 46.3%)
 - (기초)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은 6조 7,920억원, 사업비 편성액은 1조 6,230억원(사업비 편성 비율은 23.9%)

(단위: 억원, %)

구분	편성액(A)	지 출액(B)	편성비율 (A/B)
Я	42,396	124,435	34.1
광역	26,166	56,515	46.3
기초	16,230	67,920	23.9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인 자치단체가 90개, 30% 이상 자치단체 75개

(단위 : 개)

구분	합계	10% 미만	10%~20%#만	20%~30%中만	30% 이상
계	243	90	47	31	75
광역	17	2	3	0	12
기초	226	88	44	31	63

≪광역자치단체≫

- 60% 이상인 광역은 서울(69.9%), 경북(64.7%), 경기도(63.0%)이고, 10% 미만인 광역은 충남(8.7%), 전북(8.4%)임
- 광역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대체로 높은 편이며, 5개 광역단체의 경우 기초단체 평균(23.9%)보다 낮은 편성률을 보임

(단위: 억원, %)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구분	편성액 (A)	지출액 (B)	비율 (A/B)
전국	26,166	56,515	46.3	경기	5,526	8,769	63.0
서울	5,885	8,418	69.9	강원	2,642	7,115	37.1
부산	1,250	3,980	31.4	충북	552	1,259	43.8
대구	160	1,335	12.0	충남	188	2,160	8.7
인천	1,457	2,981	48.9	전북	243	2,882	8.4
광주	55	304	18.2	전남	1,647	2,884	57.1
대전	1,485	3,360	44.2	경북	2,760	4,267	64.7
울산	277	668	41.5	경남	462	1,305	35.4
세종	72	554	13.0	제 주	1,505	4,272	35.2

≪기초자치단체≫

○ 88개 자치단체는 사업비 편성 비율이 1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초단체는 광역 평균(46.3%)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60%가 넘는 단체도 16개가 존재

(단위 : 백만원, %)

구분	편성액(A)	지출액 (B)	비율 (A/B)
충청남도 금산군	57	57	100.0%
전라남도 신안군	1,603	1,701	94.2%
경기도 용인시	52,742	63,377	83.2%
강원도 양양군	1,396	1,693	82.5%
충청남도 홍성군	179	223	80.3%
경상남도 하동군	1,902	2,616	72.7%
서울특별시 강서구	28,897	42,441	68.1%
경상남도 양산시	4,367	6,432	67.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15,313	22,601	67.8%
전라북도 익산시	60,010	89,444	67.1%
경기도 부천시	7,297	10,941	66.7%
서울특별시 성동구	19,833	30,689	64.6%
전라북도 군산시	42,954	67,440	63.7%
경기도 안산시	12,085	19,543	61.8%
강원도 화천군	407	668	60.9%
서울특별시 노원구	11,790	19,520	60.4%

- 시의 경우는 시-I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시-IV는 시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음
- 군·구 유형별로 보면 구(서울)-I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며 구(서울)-II도 비율이 높아, 서울시 자치구의 편성비율이 높음

- 구(광역)- I 와 구(광역)- II 의 경우 사업비 편성 비율이 2018년
 6%대에서 2019년에는 15.8%와 12.4%로, 상승폭이 매우 컸으며,
 2020년에는 2019년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 군 유형의 경우 11.7~16.3%의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시 유형 (14.5~32.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 2018년에는 군의 평균비율이 시보다 높았으며, 2019년에는 소폭 낮았음 (단위: 억원, %) / 소수점은 반올림함

구분 편성액(A) 지출액 (B) 비율 (A/B) 계 16.230 67,920 23.9 시- 1 32.2 5.006 15,543 시-Ⅱ 468 3,180 14.7 시-III 2,134 7.486 28.5 시-Ⅳ 697 4.821 14.5 군- 1 459 2.885 15.7 군-॥ 711 4,362 16.3 군-III 222 1.477 15.0 337 군-IV 2.891 11.7 구(서울)- I 3.000 11.116 27.0 구(서울)-II 2.189 8.379 26.1 구(광역)- I 712 3,861 18.4 구(광역)-II 299 1.919 15.6

1-2 사업비 집행률(15)

-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로, 기금의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전국 지방자치단체 사업비 편성액은 4조 2,396억원, 지출액은 2조 9,375억원(사업비 집행률 69.3%)
 - (광역) 사업비 편성액은 2조 6,166억원, 지출액은 1조 8,098억원 (사업비 집행률 69.2%)
 - (기초) 사업비 편성액은 1조 6,230억원, 지출액은 1조 1,277억원 (사업비 집행률 69.5%)

(단위: 억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A/B)
계	29,375	42,396	69.3
광역	18,098	26,166	69.2
기초	11,277	16,230	69.5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해당연도 편성액 대비 지출액 비율의 경우 50% 미만 자치단체 48개,
 50~60% 미만 자치단체 31개, 60~70% 미만 자치단체 42개, 70~80% 미만 자치단체 47개, 80~90% 미만 자치단체 35개, 90% 이상 자치단체 40개

(단위 : 개)

구분	합계	50%미만	50~60%中卧	60~70%/만	70~80%P만	70~90%/만	90%이상
계	243	48	31	42	47	35	40
광역	17	2	4	2	6	1	2
기초	226	46	27	40	41	34	38

≪광역자치단체≫

○ 사업비 집행률이 90% 이상인 광역은 대전(99.9%), 강원(90.4%)이며, 70% 미만인 광역은 8개임

(단위: 억원, %)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구분	지출액 (A)	편성액 (B)	비율 (A/B)
전국	18,098	26,166	69.2	경기	2,147	5,526	38.9
서울	4,701	5,885	79.9	강원	2,388	2,642	90.4
부산	1,079	1,250	86.3	충북	310	552	56.2
대구	110	160	68.8	충남	135	188	71.9
인천	1,155	1,457	79.3	전북	185	243	76.1
광주	32	55	58.2	전남	1,196	1,647	72.6
대전	1,483	1,485	99.9	경북	1,587	2,760	57.5
울산	135	277	48.7	경남	247	462	53.4
세종	45	72	62.6	제 주	1,162	1,505	77.2

≪기초자치단체≫

- 46개 자치단체는 집행률 비율이 50% 미만으로 나타났으나, 일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보다 훨씬 높은 집행률을 보임
- 100%의 집행률을 보인 단체가 7개 단체였으며, 그 외 13개 단체도 95%이상의 집행률을 나타냄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 (A/B)
충청북도 단양군	47	47	100.0
경상남도 고성군	13	13	100.0
경상남도 밀양시	106	106	100.0
전라남도 신안군	1,603	1,603	100.0
전라남도 장흥군	491	491	100.0
전라남도 화순군	6	6	100.0
전라북도 순창군	902	902	100.0
강원도 동해시	799	800	99.9

경상북도 상주시	20.155	20,200	00.7
성영국도 영구시	20,155	20,209	99.7
충청북도 진천군	233	235	99.1
경기도 연천군	4,559	4,630	98.5
충청남도 금산군	56	57	98.2
경상북도 칠곡군	48	49	98.0
전라남도 광양시	339	347	97.7
울산광역시 북구	1,730	1,774	97.5
충청남도 부여군	2,278	2,338	97.4
전라남도 해남군	4,296	4,449	96.6
충청북도 증평군	328	341	96.2
충청남도 홍성군	172	179	96.1
인천광역시 남동구	817	859	95.1

○ 자치단체 유형별로 보면 시-Ⅲ이 78.3%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시-Ⅰ가 높은 75.8%를 보였으며, 구(광역)-Ⅰ이 가장 낮은 43.5%를 보임

(단위 : 억원, %) / 소수점은 반올림함

구분	지출액(A)	편성액(B)	집행율 (A/B)
계	11,277	16,230	69.5
시- I	3,796	5,006	75.8
시-II	281	468	60.1
시-III	1,672	2,134	78.3
시-IV	396	697	56.8
군- I	325	454	71.6
군-॥	529	711	74.4
군−Ⅲ	101	222	46.7
군-Ⅳ	218	337	64.6
구(서울)- I	2,045	3,000	68.2
구(서울)-II	1,408	2,189	64.3
구(광역)- I	310	712	43.5
구(광역)-II	189	299	63.1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 운용 실적(10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도모
- **(설치현황)**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는 지방 자치단체는 103개, 설치조례 제·개정 완료는 81개, 조례발의는 10개 단체
 - (광역) 광역단체 중에서는 대전시, 경기본청, 충남본청, 전북본청, 경남 본청이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인천시가 조례 발의를 완료한 상태임
 - (기초) 기초단체 중에서는 98개 단체가 설치운용하고 있으며, 70개 단체가 설치조례 제·개정을 완료하였고, 9개 단체가 조례 발의를 완료하였음

(단위 : 개)

구분	구분 설치운용 설치조례완료 조례발의		미설치	합계	
계	103	81	10	49	243
광역	5	11	1	0	17
기초	98	70	9	49	226

- (자치단체 유형별) 자치단체 유형으로 보면 시-IV의 설치운용비율이 60.0%로 가장 높았으며, 구(서울)-Ⅱ의 설치운용비율이 23.1%로 가장 낮음

(단위 : 개)

구분	설치운용	설치조례완료	조례 발의	미설치	합계
계	98	70	9	49	226
시- I	7	8	0	1	16
시-11	10	9	0	1	20
시-III	9	7	1	2	19
시-IV	12	7	0	1	20
군- I	11	6	1	3	21
군-॥	9	5	0	6	20
군−Ⅲ	8	7	1	4	20
군-IV	8	6	1	6	21
구(서울)- I	5	5	0	2	12
구(서울)- II	3	3	1	6	13
구(광역)- I	7	3	2	10	22
구(광역)-II	9	4	2	7	22

Ⅱ. 기금 운용의 건전성

< 기금 운용의 건전성(40) >

- 미회수채권 비율(1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0)

※ 괄호안은 배점

2-1 미회수채권 비욜(15)

-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 미수채권 총액(A)은 329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B)은 1조 1,612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A/B×100)은 2.8%
 - (광역) 미수채권 총액은 55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 1조 57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은 0.5%
 - ※ 10개 단체는 미수채권율이 0%
 - (기초) 미수채권 총액은 274억원이고 기한이 도래된 채권총액은 1,555억원으로, 미수채권 비율은 17.6%

(단위 : 억원, %)

	미수채권	기한 도래된		비	고
구분	총액(A)	가진 모네는 채권 총액(B)	미회수율	최고	최저
계	329	11,612	2.8	_	-
광역	55	10,057	0.5	68.0(세종)	O (107H)
기초	274	1,555	17.6	100 (15개)	0 (130개)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광역) 10개 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음
- **(기초)** 130개 자치단체는 미수채권이 없으나 70개 자치단체는 미회수율이 10% 이상

(단위 : 개)

구분	계	0%	0~10%/만	10~50%미만	50~90%미만	80~100%/미만	100%
계	243	140	31	9	16	32	15
광역	17	10	5	1	1	0	0
기초	226	130	26	8	15	32	15

≪광역자치단체≫

- 8개 자치단체는 미수채권이 없고, 경북(0.1%) 인천(0.3%), 충남(0.3%)은 양호함
 - 세종(68.0%), 제주(43.7%)는 비율은 높지만 금액은 비교적 소규모

(단위 :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전국	55	10,057	0.5	경기	_	1,525	0.0
서울	46	2,226	2.1	강원	1	1,946	0.0
부산	ļ	165	0.0	충북	_	452	0.0
대구	0	12	0.0	충남	2	463	0.3
인천	1	342	0.3	전북	-	122	0.0
광주	_	4	0.0	전남	_	-	_
대전	-	-	-!	경북	2	1,965	0.1
울산	_	5	0.0	경남	-	822	0.0
세종	1	2	68.0	제주	3	7	43.7

≪기초자치단체≫

- 기한만료채권을 보유한 128개 기초단체 중 약 48.4%인 62개 기초 단체의 미회수율이 50% 이상으로 채권관리의 적정성이 미흡함
 - 특히, 15개* 기초단체는 미회수율이 100%로 철저한 관리 필요
 - * 삼척시, 정선군, 광명시, 성남시, 양평균, 광주 동구, 대전 동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부산 남구, 부산 수영구, 울산 중구, 인천 미추홀구, 목포시, 괴산군
- 자치단체 구분으로 보면 구(서울)-Ⅱ(1.7%), 구(서울)-Ⅱ(3.98%), 시-Ⅱ(6.7%)의 미회수율이 낮은 반면, 군-Ⅲ의 미회수율은 83.5%에 달함

(단위: 억원, %)

구분	미수채권 총액(A)	기한도래 채권액(B)	미회수율
계	274	1,555	17.6
시- I	31	458	6.7
시-II	23	35	64.0
시-III	62	78	78.9
시-IV	24	45	54.9
군-।	20	50	40.4
군-॥	16.5	28	59.9
군-III	15.3	18.3	83.5
군-Ⅳ	25	39.5	63.8
구(서울)- I	14	356	3.98
구(서울)- II	6.8	404	1.7
구(광역)- I	26	32	81.9
구(광역)-II	10	12	82.0

2-2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15)

-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운용계획 및 지원 대상 선정 등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50%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
- 위원회 운영 2,248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 참여 기금은 1,345개(59.8%), ② 서면심사 포함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1,831개(81.5%),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2,116개(94.1%),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987개(88.4%, (19) 1,103개 → (20) 1,987개)
 - * 전체 기금(1년 미경과 기금 제외) 중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이거나 위원회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목표 기금액 조성중 인 기금 등)는 제외
 - (광역) 총 260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208개(80.0%),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225개(86.5%),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249개(95.8%),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219개(84.2%)
 - (기초) 총 1,998개 기금 중 ① 민간전문가 50% 이상은 1,137개(57.2%),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1,606개(80.8%), ③ 위원 평균 참석률 1/2 이상은 1,867개(93.9%), ④ 위원 평균 참석률 2/3 이상은 1,768개(88.9%)

구분	기금 수		평균			
1 E	(개)	①	2	3	4	점수
계	2,248	1,345 (59.8%)	1,831 (81.5%)	2,116 (94.1%)	1,987 (88.4%)	13.2
광역	260	208 (80.0%)	225 (86.5%)	249 (95.8%)	219 (84.2)	14.1
기초	1,988	1,137 (57.2%)	1,606 (80.8%)	1,867 (93.9%)	1,768 (88.9%)	13.1

^{*} 평균점수는 개별기금 대상으로 15점 만점 기준

【점수 분포 현황】

○ (광역·기초) 전년도에 비하여 90점 이상이 크게 증가함

구분	분석 대상 기금 수(개)								
TE	합계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34 (1.5%) 0 (0.0%) 34	0점		
계	2,248	1,008 (44.8%)	884 (39.3%)	129 (5.7%)	73 (3.2%)		120 (5.3%)		
광역	260	154 (59.2%)	85 (32.7%)	10 (3.8%)	8 (3.1%)		3 (1.2%)		
기초	1,988	854 (43.0%)	799 (40.2%)	119 (6.0%)	65 (3.3%)	34 (1.7%)	117 (5.9%)		

【위원회 운영 지자체별 분석】

- (광역) 2개 광역단체(울산, 전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15개)의 경우 위원회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음
- (기초) 136개 기초단체가 위원회 적정성에서 평균 90점 이상을 기록하였고, 27개 단체가 평균 75점 미만을 기록

(단위 : 개)

구 분	계	75점 미만	75~90점 미만	90점 이상
계	243	27	65	151
광역	17	0	2	15
기초	226	27	63	136

2-3 일반·기타특별회계 의존율(10)

- 기금 수입 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 구조를 유인하기 위함
- 전국 자치단체 기금수입 결산총액(B)은 8조 701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A)은 1조 2,271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A/B)은 15.2%
 - **(광역)**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6조 7,108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은 5,419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8.1%
 - (기초) 기금수입 결산총액은 1조 3,593억원이고 타회계 전입금은 6,852억원으로 타회계 의존율은 50.4%

(단위: 억원, %)

그ㅂ	타회계	기금수입	타회계	н	고	
구분	전 입 금(A)	결산총액(B)	의존율(%)	최고	최저	
계	12,271	80,701	15.2	_	-	
광역	5,419	67,108	8.1	대전 (31.2%)	강원,세종 (0%)	
기초	6,852	13,593	50.4	공주시, 홍성군 (100.0%)	65개 단체 (0%)	

【자치단체 유형별 현황】

(단위 : 개)

구분	계	1% 미만	1~10% 미만	10~50% 미만	50% 이상
계	243	73	16	59	95
광역	17	6	6	5	0
기초	226	67	10	54	95

≪광역자치단체≫

- 6개 단체는 타회계 의존율이 1%미만으로 우수하나, 5개 단체는 10% 상회
- 의존률이 높은 서울, 제주, 대전, 인천은 기금 수입구조를 개선 필요

(단위 : 억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 (%)
전국	5,419	67,108	8.1	경기	332	10,364	3.2
서울	1,081	5,197	20.8	강원	_	7,313	0.0
부산	468	3,465	13.5	충북	120	3,287	3.7
대구	1	753	0.1	충남	10	3,630	0.3
인천	596	3,712	16.1	전북	257	2,856	9.0
광주	13	1,937	0.7	전남	122	5,729	2.1
대전	1,510	4,835	31.2	경북	220	6,168	3.6
울산	148	3,091	4.8	경남	20	2,509	0.8
세종	_	540	0.0	제주	521	1,721	30.3

≪기초자치단체≫

- 기초단체 구분에서는 시-Ⅱ, 시-Ⅲ의 의존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 군-Ⅲ과 군-Ⅳ의 의존율은 다른 유형 대비 타 회계 의존율을 크게 상회하고 있어 수입구조 개선 노력이 필요함

(단위 : 억원, %)

구분	타 회계 전입금(A)	기금수입 총액(B)	의존율(A/B,%)
계	6,852	13,593	50.4
시- I	3,073	4,605	66.7
시-11	169	874	19.3
시-III	363	1,725	21.1
시-IV	512	786	65.1
군- I	307	425	64.7
군-॥	340	559	60.8
군-III	185	223	83.0
군-IV	195	256	76.1
구(서울)- I	900	2,176	41.3
구(서울)-II	617	1,523	40.5
구(광역)- I	107	182	58.5
구(광역)-II	86	209	41.2

【기금별 현황 : 타회계 의존율 95% 이상인 기금】

○ **(광역)** 타회계 의존율이 95% 이상인 기금은 총 10개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5,000	5,010	99.80
경기도	말산업육성기금	1,800	1,811	99.39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30,000	30,362	98.81
울산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06	98.81
인천광역시	남북교류협력기금	4,000	4,055	98.64
충청북도	투자진흥기금	10,000	10,228	97.77
울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	5,000	5,140	97.28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36,000	37,058	97.15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	6,500	6,755	96.23
경상남도	남북교류협력기금	2,000	2,104	95.06

○ **(기초)** 타회계 의존율이 95%이상인 기금은 총 43개, 이 중 7개는 100%

(단위 : 백만원, %)

시도명	단체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서울특별시	은평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70	170	100.00
충청북도	음성군	노인복지기금	129	129	100.00
충청남도	논산시	농업발전기금	1,000	1,000	100.00
충청남도	청양군	투자유치진흥기금	2,000	2,000	100.00
경상북도	경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0	100.00
경상남도	김해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0	100.00
경상남도	거제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0	100.00
경상남도	김해시	중소기업육성기금	4,000	4,001	99.98
전라북도	완주군	투자진흥기금	10,822	10,827	99.95
경상북도	상주시	투자유치진흥기금	30,000	30,051	99.83
전라북도	고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800	802	99.75
경기도	수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02	99.60
강원도	양구군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02	99.60
충청북도	옥천군	체육진흥기금	200	201	99.50

시도명	단체 명	기금명	타회계 전입금	기금수입 결산총액	타회계 의존율
전라북도	전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00	201	99.50
전라북도	완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150	151	99.34
서울특별시	구로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1	99.01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1	99.01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1	99.01
경상남도	양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1	99.01
경상남도	창원시	남북교류협력기금	300	304	98.68
울산광역시	울주군	남북교류협력기금	500	509	98.23
강원도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500	509	98.2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남북교류협력기금	100	102	98.04
광주광역시	남구	남북교류협력기금	50	51	98.04
광주광역시	광산구	양성평등기금	50	51	98.04
경기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673	1,714	97.61
경상남도	창원시	중소기업육성기금	13,000	13,324	97.57
경기도	고양시	남북교류협력기금	3,000	3,082	97.34
전라북도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500	2,570	97.28
부산광역시	동구	도시재생기금	2,000	2,057	97.23
경상남도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475	489	97.14
전라북도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2,000	2,059	97.13
경상북도	고령군	농업발전기금	500	515	97.09
전라남도	진도군	문화진흥기금	2,400	2,473	97.05
전라북도	익산시	남북교류협력기금	250	258	96.90
경기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1,500	1,551	96.71
전라북도	순창군	투자진흥기금	200	207	96.62
강원도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246	255	96.47
서울특별시	양천구	문화진흥기금	1,855	1,924	96.41
서울특별시	송파구	남북교류협력기금	50	52	96.15
부산광역시	사하구	노인복지기금	100	104	96.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양성평등기금	200	208	96.15

皿. 기금 정비

< 기금 정비(20) >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기금 수 현황(10)

※ 괄호안은 배점

3-1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방지하기 위함
- 전국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407조 4,576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20조 9,942억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5.2%
 - **(광역)**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183조 707억원이고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14조 7,249억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8.0%
 - (기초) 일반회계 수입총액은 224조 3,869억원, 분석대상 기금 총액은 6조 2,693억원으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은 2.8%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의무 기금 (C)	감채 기금 (D)	통합재정 안정화/금 (E)	분석 기금 (F BCDE)	비율 (F/A)
계	4,074,576	375,733	39,983	7,041	118,766	209,942	5.2
광역	1,830,707	220,712	20,592	6,788	46,082	147,249	8.0
기초	2,243,869	155,021	19,391	253	72,684	62,693	2.8

【자치단체별 분포 현황】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기금 총액 비율이 3% 미만인 자치 단체는 166개이고, 6% 이상 자치단체는 42개

(단위 : 개)

구분	합계	3% 미만	3~6% 미만	6~10% 미만	10% 이상
합계	243	166	35	23	19
광역	17	1	2	4	10
기초	226	165	33	19	9

≪광역자치단체≫

- 서울(1.5%), 경남(3.1%), 부산(5.4%)를 제외하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분석대상 기금 총액 비율이 6% 이상
- 울산은 24.2%로 전년도에 이어 기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충북(15.5%), 경북(14.6%)의 기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음

(단위: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세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총액 (B)	비율 (B/A)	구분	일 반회계 수입총액 (A)	분석대상 기금총액 (B)	비율 (B/A)
전국	1,830,707	147,249	8.0	경기	328,803	22,721	6.9
서울	358,728	5,319	1.5	강원	69,899	6,641	9.5
부산	123,501	6,729	5.4	충북	60,639	9,421	15.5
대구	89,001	6,802	7.6	충남	83,327	6,267	7.5
인천	93,728	10,616	11.3	전북	79,804	8,291	10.4
광주	60,882	7,153	11.7	전남	96,582	13,398	13.9
대전	53,707	6,799	12.7	경북	108,834	15,845	14.6
울산	37,191	9,006	24.2	경남	111,619	3,503	3.1
세종	17,042	2,337	13.7	제주	57,422	6,401	11.1

≪기초자치단체≫

○ 9개 자치단체는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이 10% 이상으로 높아 타 자치단체 대비 다소 과다

(단위 : 억원, %)

구분	일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대상 기금총액(B)	비율 (B/A)
경기도 과천시	4,328	1,074	24.8
서울특별시 종로구	6,308	1,545	24.5
서울특별시 강남구	15,078	2,946	19.5
서울특별시 서초구	9,355	1,652	17.7
경상북도 상주시	12,322	1,719	14.0
서울특별시 광진구	8,784	1,138	13.0
서울특별시 강북구	9,835	1,134	11.5
서울특별시 양천구	10,254	1,059	10.3
인천광역시 동구	3,473	356	10.2

○ 자치단체 유형별로 살펴보면 구(광역)-I, 군-Ⅲ이 가장 낮고, 구(서울)-I(6.7%)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단위: 억원, %)

구 분	일 반회계 수입총액(A)	분석대상 기금총액(B)	비율 (B/A)
계	2,243,869	62,693	2.8
시- I	434,877	15,394	3.5
시-11	266,434	5,056	1.9
시-III	239,999	6,002	2.5
시-IV	185,776	4,435	2.4
군- I	169,453	2,583	1.5
군-॥	137,090	3,693	2.7
군-III	123,700	1,257	1.0
군-Ⅳ	111,143	2,593	2.3
구(서울)- I	143,613	9,665	6.7
구(서울)- II	115,536	6,949	6.0
구(광역)- I	196,196	2,842	1.4
구(광역)-Ⅱ	120,052	2,224	1.9

3-2 기금 수 현황(10)

-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하고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 총 기금 수 2,390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235개
 - (광역) 총 기금 수 271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72개(평균 10.1개)
 - (기초) 총 기금 수 2,119개 중 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분석대상 기금 수는 1,063개(평균 4.7개)

(단위 : 개)

구분	총 기금 수	법정의무 기금 수	감채적립 기금 수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분석대상 (F=A-E	
	(A)	(B)	(C)	(D)	전체	평균
계	2,390	964	12	179	1,235	5.1
광역	271	76	6	17	172	10.1
기초	2,119	888	6	162	1,063	4.7

【자치단체 유형별 기금 수 분포】

(단위 : 개)

구분	합계	7개 미만	7~9개	10~11개	12개 이상
계	243	166	57	13	7
광역	17	1	6	6	4
기초	226	165	51	7	3

≪광역자치단체≫

- 경남(4개), 세종(7개) 등 2개 단체는 분석기금 수가 7개 이하로 관리되고 있음
- 경북(16개), 제주(14개), 경기(13개), 전남(12개), 서울(11개), 대구(11개), 대전(11개)은 기금 수가 11개 이상임

(단위 : 개)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구분	모든 기금 수	분석 기금 수
전국	271	172	경기	19	13
서울	16	11	강원	13	8
부산	18	10	충북	14	10
대구	18	11	충남	13	9
인천	15	9	전북	14	9
광주	17	10	전남	17	12
대전	17	11	경북	21	16
울산	15	8	경남	8	4
세종	13	7	제주	23	14

≪기초자치단체≫

- 대구 동구, 대구 달서구, 전남 화순군, 경남 고성군 등 121개 단체는 분석 기금 수가 4개 이하
 - 서울 성북구 13개, 동작구 12개, 청주시 12개 등 10개 단체는 10개 이상의 기금을 운용

(단위 : 개)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 합재 정 안정화기금 (D)	분석 기금 수 (A-B-C-D)
서울특별시 성북구	16	3	0	0	13
서울특별시 동작구	17	4	0	1	12
충청북도 청주시	20	7	0	1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15	4	0	0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16	4	0	1	11
서울특별시 서초구	15	3	0	1	11
서울특별시 양천구	16	4	0	1	11
경기도 안양시	15	4	0	1	10
서울특별시 도봉구	15	4	0	1	10
충청남도 천안시	17	6	0	1	10

- 자치단체 유형별로는 구(서울)-I가 평균 9.8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구(서울)-Ⅱ는 평균 8.5개의 기금을 운용
 - 반면 구(광역)-Ⅰ와 구(광역)-Ⅱ의 평균 기금 수는 각각 2.7개와 3.0개로 타 유형 대비 적은 것으로 나타남

(단위:개)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단체명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적립 기금 수 (C)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D)	분석 기금 수 (A -B- C-D)	평균 기금 수
계	2,119	888	6	162	1,063	9.4
시- I	221	89	-	15	117	7.3
시-11	209	88	2	15	104	5.2
시-III	205	85	3	15	102	5.4
시-IV	187	84	0	16	87	4.4
군-।	165	78	0	17	70	3.3
군-॥	170	67	1	14	88	4.4
군-III	147	70	0	16	61	3.1
군-IV	165	68	0	15	82	3.9
구(서울)- I	170	46	0	7	117	9.8
구(서울)- II	174	55	0	8	111	8.5
구(광역)- I	149	78	-	12	59	2.7
구(광역)-II	157	80	-	12	65	3.0

IV. 가·감점

4-1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 계획 (+1점)

-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제시된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한해 1점 가점 부여하여,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의 개선 유도를 하기 위함임
-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계획을 제출함(해당없음 포함)
- 다만 작성 내용의 충실성에 있어서는 자치단체간 편차가 존재하여,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통해 내실있는 작성을 할 필요가 있음
- (광역) 17개 전 광역단체가 가점을 받았음
- **(기초)** 182개 단체가 가점을 받았음
- 광역 I 의 가점 비율이 가장 높으며, 시Ⅱ와 군Ⅲ의 가점 비율이 가장 낮음

구분	가점 단체	단체수	비율
합계	182	226	80.5%
시Ⅰ	13	16	81.3%
시Ⅱ	13	20	65.0%
시III	15	19	78.9%
시IV	17	20	85.0%
군 I	18	21	85.7%
군Ⅱ	16	20	80.0%
군Ⅲ	13	20	65.0%
군Ⅳ	17	21	81.0%
서울 I	10	12	83.3%
서울II	9	13	69.2%
광역 l	22	22	100.0%
광역 II	19	22	86.4%

4-2 경상적 경비 비율(△2점)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내)
- (전국) 46개 자치단체, 51개 기금에서 감점 조치되었으며, 경상적 비율이 5% 이상인 기금은 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광역) 부산 2개, 인천 1개, 충남 1개 기금이 경상적 비율이 5% 이상
 - (기초) 43개 자치단체, 47개 기금에서 감점 조치되었음

단체명	감점 기금수	감점 합계
계	51	△25.5
부산 본청	2	△1
인천 본청	1	△0.5
충남 본청	1	△0.5
서울특별시 종로구	3	△1.5
서울특별시 노원구	2	△1
서울특별시 송파구	2	△1
서울특별시 중구	1	△0.5
서울특별시 성동구	1	△0.5
서울특별시 강북구	1	△0.5
서울특별시 마포구	1	△0.5
서울특별시 양천구	1	△0.5
서울특별시 구로구	1	△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1	△0.5
서울특별시 동작구	1	△0.5
서울특별시 서초구	1	△0.5
서울특별시 강남구	1	△0.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1	△0.5
부산광역시 사하구	1	△0.5

56

부산광역시 금정구	1	△0.5
부산광역시 연제구	1	△0.5
인천광역시 부평구	1	△0.5
광주광역시 서구	1	△0.5
광주광역시 남구	1	△0.5
광주광역시 북구	1	△0.5
광주광역시 광산구	1	△0.5
대전광역시 서구	1	△0.5
대전광역시 유성구	1	△0.5
경기도 고양시	1	△0.5
경기도 부천시	1	△0.5
경기도 이천시	1	△0.5
경기도 오산시	1	△0.5
강원도 양구군	1	△0.5
충청북도 청주시	1	△0.5
충청북도 음성군	1	△0.5
충청남도 천안시	1	△0.5
충청남도 예산군	1	△0.5
전라북도 전주시	1	△0.5
전라남도 목포시	1	△0.5
전라남도 강진군	1	△0.5
전라남도 무안군	1	△0.5
경상북도 경주시	1	△0.5
경상북도 영천시	1	△0.5
경상북도 성주군	1	△0.5
경상북도 봉화군	1	△0.5
경상남도 창원시	1	△0.5
경상남도 거제시	1	△0.5

57

4-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1)

- 기금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함
- (전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를 각각 모두 작성한 97개 자치단체에 가점이 부여
 - (광역) 총 12개 자치단체* 가점
 -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경북
 - (기초) 85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하여 가점 부여

구분	단체	구분	단체	구분	단체
丁世		丁世		TE	
시- I	경상남도 김해시	군-॥	강원도 횡성군		서울특별시 종로구
	경상북도 포항시		강원도 평창군	구(서울) -II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전라북도 전주시		충청북도 옥천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충청북도 청주시		충청남도 서천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시-11	경상북도 구미시		전라남도 고흥군		서울특별시 광진구
	경상남도 진주시		전라남도 해남군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라남도 여수시		전라남도 영광군		서울특별시 도봉구
	충청남도 아산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III	강원도 강릉시	군-III	강원도 양양군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상북도 경주시		충청북도 보은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라남도 나주시		전라남도 보성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라남도 목포시		경상남도 산청군	구(광역) - I	대구광역시 달서구
	전라북도 군산시		경상남도 함양군		인천광역시 연수구
	경상북도 안동시	군-Ⅳ	전라북도 진안군		인천광역시 부평구
IJ-IV	충청북도 제천시		전라북도 무주군		인천광역시 서구
	경상남도 통영시				광주광역시 서구
			전라북도 순창군		광주광역시 북구
	경상북도 상주시		전라남도 장흥군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상북도 영주시		전라남도 함평군		울산광역시 남구
	경상북도 영천시		경상북도 봉화군		울산광역시 북구
	전라북도 남원시	- (사울) - I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광역) -II	부산광역시 중구
	전라북도 정읍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산광역시 서구
	충청남도 보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산광역시 동구
군- I	강원도 홍천군				부산광역시 북구 부산광역시 사하구
	충청북도 진천군		서울특별시 양천구		부산광역시 금정구
	충청북도 음성군		서울특별시 관악구		부산광역시 <u> </u>
	충청남도 부여군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구광역시 중구
	전리북도 완주군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전광역시 중구
	경상북도 울진군		서울특별시 강동구		울산광역시 동구

Ⅳ. 개선 권고 및 결과 공개

Ⅰ. 개선 권고사항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단체의 기금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제3항)

□ 권고 내용

①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편성비율이 10%미만인 자치단체는 목적사업 내에서 사업 분야·대상 확대 등 적극 활용 검토

※ 대상 : 충남(8.7%), 전북(8.4%) 등 90개 지자체

② 사업비 집행률

- 광역단체('19년 85.1%→'20년 69.2%)는 전년도에 비해 낮아졌으며 기초단체 ('19년 58.1%→'20년 69.5%)는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광역단체의 집행관리 노력 필요
- 특히, 사업비 집행률이 50%미만인 자치단체는 집행률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 마련 필요

※ 대상 : 경기(38.9%)·충남 청양군(8%)·전북 진안군(6.11%) 등 48개 지자제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영

-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관리 등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 마련*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 개정('20.6.9.)
- 미설치 지자체의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설치·운영 권고

※ 대상 : 서울시 중구·경기도 시흥시 등 49개 기초지자체

④ 미회수채권비율

- 광역단체(0.5%)에 비해 기초단체의 미회수채권 비율(17.6%)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기초단체 미수채권 관리 노력 강화 필요
- 미회수채권 비율이 50%이상인 자치단체는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100%인 지자체는 철저한 관리가 요청됨
- ※ 대상 : 미회수채권 비율이 50%이상인 지자체는 세종(68%) 등 63개이고, 이중 비율이 100%인 지자체(기초)는 광명시·목포시 등 15개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기초지자체의 경우 민간전문가 50%이상 참여(①번항목) 충족 기금 수 비율이 57.2%(1,137개)이므로, 민간전문가 참여 비율 향상 노력 필요 ※ 민간전문가 비율 50% 미만 기초 지자체 수: 851개

⑥ 타회계 의존율

○ 조례 제정을 통해 조성된 기금 중 타회계 의존율이 50% 이상인 개별기금은 일반회계 통합 및 수입구조 개선 조치 필요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조성액 비율

- 일반회계 수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동종단체 평균* 이상 자치단체는 개별 기금의 과다 조성 여부 검토
 - * (광역 8.0, (사 I) 3.5, (사 II) 1.9, (사 III) 2.5, (사 IV) 2.4, (군 I) 1.5, (군 II) 2.7, (군 III) 1.0, (군 IV) 2.3, (귀서울— I) 6.7, (귀서울— II) 6.0, (귀생역— II) 1.4, (귀광역— II) 1.9

⑧ 기금 수 현황

- 기금 수가 동종단체 평균*을 초과하는 단체는 기금 수 적정성 검토 및 유사기금 통합, 저성과 · 불필요한 기금 폐지 등 정비 필요
 - * (광역 10개, (사 I) 7개, (사 II) 5개, (사 III) 5개, (사 IV) 4개, (군 I) 3개, (군 II) 4개, (군 III) 3개, (군 IV) 3개, (구(서울-I) 9개, (구(서울-II) 8개, (구(광역-II) 2개, (구(광역-II) 3개) (소수점 버림)

- ⑨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 **전년도 개선권고사항 조치계획 :** 작성 내용이 부실하여 가점을 받지 못한 지자체^{*}의 경우 조치계획 제출 및 권고사항 이행 * 대상 : 기초 44개
 - **경상적 경비 비율**: 감점 조치 지자체는 불필요한 경비 삭감 등 세출 부문 구조조정 필요 ※ 대상(46개): 광역 3개 + 기초 43개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 :** 서류 작성·제출 협조 요청 ※ 대상(146개) : 광역 5개 + 기초 141개

Ⅱ. 성과분석 결과 공개

□ 근거

○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시 자치단체 성과분석 결과의 확인·점검 및 권고 내용을 공개할 수 있음(지방기금법 제14조 제3항)

□ 공개 내용

- (자치단체) 분석지표별 결과 값을 유사단체와 비교하여 공개하고, 각 기금별 세부분석 결과 첨부
- (행안부)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결과를 종합한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를 '지방재정365'에 게시